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작성해야 할 정보 제공 요청서, 기록·관리대장 등 서식을 신설하고,

해외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국적, 외국이름,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추가하여 국내외 장기 실종아동등의 원활한 가족상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방법·절차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법인·단체의 장
5. 개인

②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 사실을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보관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4제4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9 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록·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

요청자	주무과장 (상황실장)

년	월	일	시	분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휴대전화번호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담당자				
책임자				
요청 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상의 진료일시 []			
세부 요청 내용	요청 기간			
	요청하는 내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

귀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수집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상의 진료일시 []

수집된 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실종아동등 발견 등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

귀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

연번	요청 일시	등록 대상자 정보			파기 정보	파기 사유	파기방법		파기 일시	처리자
		성명	대상 구분	정보시스템 일련번호			전자적 파일 (영구 삭제·복원 불가능 조치)	인쇄물 등 (파쇄·소각)		

신상정보서

작성일	년 월 일		
검사대상자 (본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 무연고자	(다른이름:) []신원 확실 []신원 불확실	
	☐	한국이름	국적, 국적에 따른 국민·개인식별번호 (필요한 경우 여권번호)
	무연고 해외 입양인	외국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나 이		전화번호
	[]추정 []확실		
주소 및 보호시설명			
장애 유무			
[]유 []무			
찾는 대상	☐ 부	성 명	
	☐ 모	[]신원 확실 []신원 불확실	
	☐ 아들(1촌관계)	주민등록번호	
	☐ 딸(1촌관계)	(생년월일)	
	☐ 남자형제(2촌관계)	장애 유무	
	☐ 여자형제(2촌관계)	[]유 []무	
법정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채취 경찰관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작성자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방법·절차 등) ①</u> <u>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4제 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u> <u>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u> <u>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u> <u>4. 법인·단체의 장</u>

5. 개인

②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 사실을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보관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4제4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록·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안전교통국	
연 락 처	(02) 3150 - 1394